

##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

요청인 (대상자)	성명 (외국인인 경우 영문명)		
	생년월일 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		
범죄경력 여부	아동 대상 성범죄 경력	[ ] 있음	[ ] 없음
	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	[ ] 있음	[ ] 없음
	가정폭력 범죄 경력	[ ] 있음	[ ] 없음
	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경력	[ ] 있음	[ ] 없음
	마약 범죄 경력	[ ] 있음	[ ] 없음
건강진단서	정신질환 병력 여부	[ ] 있음	[ ] 없음
	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	[ ] 있음	[ ] 없음
	진단서 발급 날짜	년	월 일

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9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인

### 유의사항

-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,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) 및 국적을 적습니다.
-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는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말한다.
-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